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아이비이앤씨(주)(배동지) ②코오롱글로벌(주)(김정일)

③디엘건설(주)(박유신) ④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홍석화)

나. 전화번호 : ①02-3402-2225 ②02-3677-3114 ③02-2170-5000 ④02-3434-5114

2. 명칭 : 강형 판재가 일체형으로 매입 제작된 PHC 파이프를 활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SP벽체파일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연속시공으로 주열식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지반굴착 시 벽체 단면의 면따기 없이 띠장을 설치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강형 판재를 전체 길이에 매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된 PHC 파일(SP벽체파일)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범위>

연속시공으로 주열식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지반굴착 시 벽체 단면의 면따기 없이 띠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강형 판재를 전체 길이에 매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된 PHC 파일(SP벽체파일)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